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 및 제71조).
- ‘전주’를 ‘전봇대’로 용어를 변경함(안 제22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